

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 수정
 -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2조 수정
 -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”를 “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
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9조의2”를 “제30조”로, 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”를 “수돗
물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수질관리 기술의”를 “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
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<u>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</u>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수도사업자에 대한 <u>수질관리 기술의 자문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30조</u> ---- ----- ----- -----<u>수돗물평가위원</u> <u>회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</u> --</p> <p>3. <u>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</u>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 자	상하수도사업소장 최 근 익
연 락 처	(033)330-2363

관계 법령

□ 수도법

제30조(수돗물평가위원회)

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② ~ ④ 생략